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권역	권역		
	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승인번호	-	호[년 월 일]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양여 신청 면적			

위의 국유·공유재산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규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대장 2. 지적도	

처 리 절 차

